

【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2026-36호】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)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8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



1. 건명: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반환명령, 의견제출 통지)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명단)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7. 8. ~ 2026. 7. 22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(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, 7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545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(고용보험수사관) 김효정(전화 054-440-33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

(공고기간 : 2026. 7. 8. ~ 2026. 7. 22.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								
1	박*혁	1982. 3. 1.	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3길 26 (이하 생략)	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	<p>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 미신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- 실업급여 반환명령액: 총 1,848,000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부정수급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추가 징수액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해당 실업인정 기간 반환액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지급중지일 이후 반환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122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26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정수급액	추가 징수액	해당 실업인정 기간 반환액	지급중지일 이후 반환액	1,122,000원	0원	726,000원	0원	폐문부재
부정수급액	추가 징수액	해당 실업인정 기간 반환액	지급중지일 이후 반환액											
1,122,000원	0원	726,000원	0원											